

성남 도시관리계획(판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판교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5. 6. 2.

성 남 시 장

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나) 판교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- 7) 기타시설용지 : 변경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교1	교1	용도	· 교육연구시설 (학교 중 전문대학원 , 교육원, 직업훈련소, 도서관) · 부수용도로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휴게음식점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서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학원)
		변경	· 교육연구시설 (학교 중 대학교, 대학원 , 교육원, 직업훈련소, 도서관) · 부수용도로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휴게음식점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서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학원)
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6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7.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: 변경

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: 변경

기 정		
제2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별 시행지침		
〈교육연구시설에 관한 사항〉		
제27조 (건축물의 허용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)		
교육연구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<표Ⅱ-5-8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		
< 표Ⅱ-5-8 > 교육연구시설의 허용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분류표		
구 분		교육연구시설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G1
	허용용도	- 교육연구시설 (학교 중 전문대학원, 교육원, 직업훈련소, 도서관) - 부수용도로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휴게음식점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서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학원)
변 경		
제2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별 시행지침		
〈교육연구시설에 관한 사항〉		
제27조 (건축물의 허용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)		
교육연구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<표Ⅱ-5-8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		
< 표Ⅱ-5-8 > 교육연구시설의 허용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분류표		
구 분		교육연구시설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G1
	허용용도	- 교육연구시설 (학교 중 대학교, 대학원, 교육원, 직업훈련소, 도서관) - 부수용도로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휴게음식점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(서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학원)

□ 도시관리계획(분당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